130. 건설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양성 국소성 근위축증

성별 남 나이 47세 직종 건축건설공사 업무관련성 낮음

- **1. 개요:** 근로자 정OO은 OO주택(주) 1996년 입사하여 현장소장으로서 근무하던 중 2007년 1월 2일 '양성 국소성 근위축증'을 진단받았다.
- 2. 작업내용 및 환경: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 정OO가 수행한 주요 업무는 콘크리트 믹 성작업 , 함마드릴을 이용하여 바닥 및 벽을 다듬거나 헐어내기, 그라인더를 이용한 철근 절단 및 벽면 다듬기, 착암기를 이용한 터파기 작업 등이다. 본인 진술에 의하면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가 다양했으며 하루 평균 10시간가량 작업을 했다고 한다. 진동공구에 의한 국소진동노출을 평가한 결과 4종의 진동공구와 1일 4종의 공구를 각각 1시간 30분간 사용에 따른 진동노출수준은 모두 EAV(기준 2.5%)를 초과하였다. 진동공구별 진동노출량에 따른 근로자 10%의 백지증 발병이 예상되는 노출기간을 평가한 결과해머드릴(HM0810T)의 위험성이 가장 크며, 발병 예상기간은 6.4년이다. 또한 해머드릴 (HM1304) 8.0년, 전기드릴(콘크리트 믹서기) 9.3년, 디스크그라인더 9.9년이며, 4종의 공구를 각각 1시간 30분간 사용에 따른 예상기간은 8.1년으로 분석되었다.
- 3. 의학적 소견: 근력저하를 확실하게 느끼게 된 것은 2005년 활석 작업을 하던 도중 우측 팔에 힘이 빠져 공구를 쥐지 못하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경험 이후였다. 하지만 회사 사정상 통증, 저린 감각, 감각저하 및 근력저하에 대해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못하였다. OO대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 신경전도 검사 상 양성국소성 근위축증 진단을 받았고, 이후 OO의료원으로 전원하여 근력저하에 대한 재활치료 및 양측 손목 · 팔꿈치 통증, 양측 4번째 5번째 손각락 감각저하, 요통, 우측 하지 방사통, 우측 4번째 5번째 발가락 감각저하에 대해 보존적 치료를 받고 있다.

4. 결론: 근로자 정OO은

- ① 1996년 OO주택(주)에 입사하여 약 11년 동안 작업을 하다가 양성 국소성 근위축 증에 이환되었는데,
- ② 작업 중 상지 신경계 및 근골격계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국소진동에 노출되었지만,
- ③ 국소진동은 중추신경계인 경추척수의 전각세포 손상에 의해 발생하는 하위운동신 경 질환인 양성 국소성 근위축증과의 관련성은 낮으며,
- ④ 목의 굴곡 등 국소진동 이외의 다른 작업 요인 또한 질병의 발생을 초래하거나 악화시킬 정도는 아닐 것으로 평가되므로,

정OO의 양성 국소성 근위축증은 업무와 관련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었다.